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한 병 구

1. 머리말

과거의 「천대받은 공중」(The public be damned)이란 표현이 그 후 18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사회발전과 더불어 「소비자(공중)가 왕이다」(The consumer is king)라는 표현으로 변질되었듯이 언론자유 개념도 근대사회에서는 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 보아왔던 것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이 개념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천부불가양도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여타 모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우월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적 자유로서의 개개인의 인권도 기본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양자간에는 좋은 나쁜간에 복잡한 충돌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양자간의 충돌은 주로 언론이 언론의 자유라는 인권을 내세워 시민적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침해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press ombudsman 제도나, 언론윤리위와 같은 자율규제기구, 혹은 한국에서처럼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두어 양자간의 마찰을 심의, 조정 내지는 중재함으로써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개자로서 교량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인권은 과연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생성해 왔는지 다음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본적 인권

우리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은 남녀 · 빈부 · 귀천의 구별 없이 나서부터 인간의 인간다운 고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인 이상에는, 생을 형유할 이상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질 수 있고 또한 가져야 할 자연적 · 선천적 권리로서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절대무한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류는 유사 이래 이 권리의 획득을 위해 투쟁해 왔으며 역사는 실로 이 인권을 누르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와의 투쟁의 기록으로 엮어져 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권보장은 일찍이 영국에 있어서 1215 년의 대헌장(Magna Carta), 1628 년의 권리장전(Petition of Right), 1679 년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그리고 1689 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등 영국의 제법률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동기는 18 세기 후반에 제정된 미국 합중국헌법 및 각 주의 헌법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1776 년 6 월의 버지니아권리장전, 제 1 조는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평등이고, 자유이고 독립이며,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표현, 같은 해 7 월의 미국독립선언 중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조물주로부터 특정의 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취지의 선언, 그리고 1789 년 8 월의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등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 2 차 대전 후의 1948 년 12 월 10 일 런던에서 있었던 유엔 제 3 차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 전문 30 개조)은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평등이다」(제 1 조)라고 하였고 또한 「누구든 생존,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제 3 조)라고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권리를 지상의 가치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상이 국제적으로도 강렬하게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1945 년 7 월 26 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서명된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 제 10 항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츠담선언을 제하고 좀체로 「기본적 인권」이란 용어는 쓰지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란 개념은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우리나라 헌법에서 자주 쓰여지고 있는 「자유를 갖는다」, 혹은 「권리를 갖는다」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헌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9 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서독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는데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독일헌법에서는 상기한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는 표현 대신에 「기본권」이라고 표현한다.

3. 언론과 인권

머릿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인권과 시민 개개인의 인권과의 사이에는 오랜 역사와 함께 갈등관계에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양자간의 갈등관계는 특히 17세기 중반부터 대두된 일간신문의 출현과 그 후 1833년 미국에서 서막을 연 대중신문(Penny Press)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차 언론이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하더라도 양자간의 충돌은 그렇게 빈번한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는다.

어쨌든 미국은 황색신문시대를 맞이하면서 신문의 선정적인 기사가 큰 사회문제로 클로즈업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당시 보스턴에서 함께 변호사 개업을 하던 두 변호사 워렌(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즈(Louis D. Brandeis)가 공동집필로 1890년 12월 15일자의 Harvard Law Review 지에 「프라이버시권리」란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본다.

또한 1886년초 미국의 제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레블랜드는 어느 날 신혼여행을 갔는데 한 백악관 출입기자가 그 곳까지 추격해서 신혼부부의 밀월여행 모습을 살살이 보도하자 이에 격분한 클레블랜드 대통령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하버드대학에서 있는 한 연설에서 기자들을 지각 없고, 더러운, 그리고 비열한 전달자들이라고 비평한 적도 있다.

권리의식의 향상은 고도의 문화수준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문화수준도 매우 향상된 시기였다. 이 시기와 때를 같이해서 1890년 초부터 소위 황색신문시대를 맞아 신문들은 전에 볼 수 없이 범죄, 성 또는 가십이나 스캔들의 포로 등 선정적인 보도로 시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양자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배경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고도의 자본주의 발달과 병행해서 신문기관도 하나의 대기업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윤추구의 기업경향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선정적인 보도로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함으로써 발행부수의 신장을 꾀하고자 신문기관 간에는 격렬한 경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 결과 신문은 그 본질인 정신적인 것, 즉 사회의 공기로서 혹은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사명의식이 퇴조하고 그 대신 이익추구라는 경제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가운데서 그 양상을 더욱 농후하게 했던 것이다.

둘째는, 문화수준의 향상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부터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문화수준도 매우 향상된 시기로서 문화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권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자각이 증대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권리의식의 자각이 증대되면서 언론과 시민 개개인의 인권간에는 더욱 더 복잡한 충돌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 마디로 시민들은 신문의 무책임할 만큼 선정적이며 포로적인 보도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서 신문이 소수의 정치·경제적인 강자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항의의 소리마저 높아지자 신문계의 일각에서는 신문 스스로가 자숙하는 뜻에서 자주적인 규제를 행한 필요가 있다는 운동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신문의 자주규제제도에는 여러 형태의 것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박한 형태는 언론인 단체가 저널리즘 활동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주적이며 자율적으로 저널리즘 활동에 일정한 규율을 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채택된 최초의 것은 미국신문 편집자협회가 1923년에 채택한 「저널리즘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동 강령은 독립, 성실, 진실과 정확, 공평, 품위, 책임 그리고 자유라는 7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런 추세에 병행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957년 4월 전국 일간신문·통신사 편집인을 중심으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조직하고 자유, 책임, 보도와 평론의 자유, 독립성, 지인의 명예와 자유 그리고 품격이라는 6개항의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인직업단체가 채택한 윤리강령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 보완책으로 언론단체가 스스로 설립한 전문기구에 의해서 저널리즘활동을 자주적으로 감시하고자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자주규제기구가 흔히 말하는 프레스평의회로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서는 1953년에 설립된 영국의 프레스평의회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레스평의회는 74년 현재 세계적으로 18개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18개국 프레스평의회는 규약으로부터 평의회 임무에 관해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즉, ① 프레스 자유의 옹호, ②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감시, ③ 프레스의 경제상태의 감시, 그리고 ④ 프레스법제에의 영향력의 행사가 그것이다. 이들 4개의 임무 중 가장 많은 나라의 평의회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임무는 「윤리 강령의 준수에 대한 감시」로서 18개국 모두가 이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언론과 개개인의 인권관계가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4. 언론중재제도의 역사적 배경

현대사회를 가리켜 흔히 매스컴 시대라고 들 표현한다. 그만큼 매스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스컴의 중요성 때문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리가 없다. 위에서 언급된 신문의 윤리강령제정이나 프레스평의회 설치 등도 바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이 본연의 사명의식을 갖고 책임있는 보도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참된 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제 5 공화국 헌법은 언론조항에서 그 특성을 언론의 사회적 책임강조에 두고 있다. 또한 언론기본법에서도 언론의 「공공적 책임」, 「공공적 기능」, 「공공적 임무」, 혹은 「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해야 하며... 사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강조의 일환책으로 언론기본법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당해 보도기관에 대해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제 49 조)」했고,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토록 (제 50 조)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4 월부터 그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ㄱ. 언론중재제도의 효시

언론중재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은 스웨덴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레스 옴부즈맨(Press Ombudsman)이란 특수형태의 자주규제 기구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도 그 효시를 스웨덴의 프레스 옴부즈맨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옴부즈맨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표현으로서는 감찰인 내지는 감시인이란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

옴부즈맨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는 1809 년의 스웨덴 헌법에서 비롯된다. 당시 스웨덴 헌법에서 옴부즈맨제도를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한 동기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구의 거대화과 복잡화에 따라, 국민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것으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행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시한 공정한 행정의 보장책으로서 옴부즈맨제도를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은 헌법상의 기관이며 초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임명하는 3 년 임기제의 공무원으로서 의회행정감찰관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첫째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령이 행정부에 의해 잘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며, 둘째로 개인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이 제지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에 있어서 옴부즈맨제도는 처음에는 행정권의 남용에 대한 하나의 규제기구로 출발하였다. 스웨덴에 있어서 프레스 옴부즈맨제도도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그 취지는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즉, 1960 년대에 접어들면서 강대하고도 영향력이 막중한 매스미디어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이 성역 속에 안주하면서 남에게만 타격을 가한다는 등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와 함께 언론은 자기들이 제정한 언론윤리강령이나 프레스평의회 기능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반격력이 전무한 시민에 대해서 일방적인 타격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그 결과 스웨덴에서는 1967 년 프레스평의회(1916 년 설치된 것으로 세계에서 최초의 것)의 규칙일부를 개정하고 옴부즈맨제도를 프레스에 적용했다. 따라서 프레스 옴부즈맨은 말하자면 프레스평의회의 행정관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프레스평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도록 되어있다.

프레스 옴부즈맨제도의 규칙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① 스웨덴의회 행정 옴부즈맨 한 사람과 ② 전국법률가협회 회장 그리고 ③ 프레스협력합동위원회(내셔널 프레스클럽, 신문발행인협회, 신문기자연맹의 3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등 세 사람의 합의에 따라 선출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그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같이 옴부즈맨은 주로 시민으로부터의 민원사항을 근거로 해서 중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항으로서는 보도기관이 개인에 대한 명예나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가 주종을 이루는 경향이 많다. 이밖에도 옴부즈맨의 중재사례는 범죄나 재판에 관한 지나친 선정적인 보도의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스웨덴의

프레스윤리강령은 범죄의 피의자나 2년의 금고이하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씨명을 지상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나 재판에 관한 선정적이며 폭로적인 보도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달 동안 끔찍한 범죄 사건들이 잇달아 있었다. 보도기관은 이를 취급함에 있어 피의자를 마치 범인 시 한다든가 혹은 피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보아오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 26 조 4 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신문윤리강령의 「타인의 명예와 자유」 조항에서도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점 보도기관의 각별한 유의가 요청된다.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맨이 중재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즉 독자로부터의 민원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 또는 공공문제에 관한 논평의 경우이다. 이는 신문이 정치적, 공공적 문제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발표할 자유까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확인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옴부즈맨에 의해 각하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다만 정치적, 공공적 문제에 관한 논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확하거나 특정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끝으로 스웨덴에서는 프레스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 이래 몇 지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 같다. 첫째로 1980 년 1 년 동안 옴부즈맨이 접수한 소추사건은 약 4 백건에 이르렀는데 이중 약 80%는 기각되었다. 기각이라도 당해 보도기관이 정정 또는 반론을 지면에 게재함으로써 소추를 취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또 10%에 대해서도 옴부즈맨이 건책의견서를 공표했고, 나머지 10%도 프레스평의회에 회부되었다. 이 회부된 3 건 중 2 건은 보도기관의 과오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둘째로 언론의 윤리수준이 주목할 만큼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공신력도 매우 제고되었다는 것이다.

ㄴ. 언론자율규제제도의 실태

언론중재제도는 그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터키의 경우처럼 「신문영예재판소」(Press Court of Honor)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영국처럼 프레스평의회가 담당하는 경우, 혹은 미국처럼 신문사 내에 자체 옴부즈맨을 두고 그 업무 전담케 하는 등 그 형태는 다양하다.

스웨덴의 프레스 옴부즈맨제도와 비교해서 기구의 독립성 내지는 그 기능면에서 가장 유사한 제도는 어감이 좀 강렬한 인상이라는 하지만 상기한 터키의 「신문영예재판소」 제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터키는 1960년 5월 무혈 쿠데타가 일어난 후 같은 해 7월 터키신문협회는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동 강령의 실천기구로서 동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 재판소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소는 1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7명은 각 신문단체에서, 나머지 3명은 부외자로서 부외자중에서 의장이 선출된다. 3명중 1명은 이스탄불대학의 교원 중에서 상원이 선출하고, 1명은 이스탄불 지구의 선임재판관이,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이스탄불법률협회 회원 중에서 1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된 자율규제기구이다.

기능면에서도 스웨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민원사항의 소추가 없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그 사항을 심의해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문과 민원신청자간에 화해가 성립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재정의 공표를 신문에 게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터키의 경우와는 달리 영국의 민원처리위원회 제도나 미국처럼 사내에 두고 있는 옴부즈맨제도는 민원사항에 대해 심의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신문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양자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1953년에 설립된 영국의 프레스평의회는 1963년에 있는 일부 규칙개정에서 산하에 민원처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한데서 연유된다. 이 위원회의업무는 신문의 활동이나 신문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대해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고, 그리고 이들 민원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에서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위원회가 접수하는 소추사건은 1년 평균 3백건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이밖에도 영국은 1972년에 방송협회(BBC)산하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민원처리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영국에 있어서 민원처리위원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혹은 제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목계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는 두개의 심리가 동시에 행하여 진다는 것을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되며 이런 경우 프레스평의회는 그 민원사항이 재판소에 넘겨지는 것은 바라고 있다. 그 둘째는 평의회에서의 심의결과를 민원신청자가 소송의 자료로 이용해서 신문사측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는 스웨덴이나 영국의 경우와는 또 다르다. 미국에서는 신문사가 자사 내에 옴부즈맨이란 독자적인 자주규제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바넷(William Barnett) 조사에 의하면 주요일간지 134 개지에 설문지를 보낸 결과 이중 17 개지가 독자의 민원을 조사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있으며 15 개지는 내부적인 감시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일간지수가 1,760 여 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신문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옴부즈맨제도를 채택한 신문은 The Louisville Courier Journal 로서 1967 년의 일이다. 이 신문의 옴부즈맨 역할은 주로 신문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오보 또는 윤리적인 잘못이 인정될 때는 자사의 과오를 시인, 그에 대한 정정 또는 사과문을 쓰는 일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접수된 민원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경영진에게 보고했고 편집실에 게시하는 일도 담당한다.

상기 Journal 의 경우도 그렇지만 옴부즈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옴부즈맨을 자사 내에서 편집국장이나 부장급 수준에서 겸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70 년부터 이 제도를 채택한 Washington Post 의 경우는 이보다 진일보해서 사외에서 신문에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을 5 년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Washington Post 지의 옴부즈맨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동지의 옴부즈맨 역할은 ① 동지에 게재된 매일의 지면을 심사하고, 편집자나 기자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을 정기적으로 내부배포 하는 일, ② 독자로부터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일, 그리고 ③ 논설란에 마련된 칼럼에 동지를 포함한 뉴스 미디어 전선에 걸친 동향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논평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촉진하는 일등이다. 그런데 옴부즈맨이 매일 접수하는 민원사항은 전화로 4~5 건, 편지로 4~5 건 등 매주 약 50 건이 접수된다고 한다.

5. 맺는말

이상에서 몇 개 나라의 언론자유규제기구의 제도를 종합해 볼 때 영국의 프레스평의회
경우는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와 당해 신문사에 시정을 권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옴부즈맨의 경우는 자기신문에 대한 비판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는 데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스웨덴이나 터키에서 채택되고 있는 프레스 옴부즈맨제도나
신문영예재판소제도는 신문에 대한 독자의 불만이나 의견을 접수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신문사에 대해 정정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에 덧붙여서
피해자와 당해 신문사와의 중재를 담당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스웨덴이나 터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영 ?미의 그것보다 같은 자율적
기구이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다소 구속력이 있어 보인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일찍이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는 실정법으로 이를 인정하였다. 1881 년
개정된 프랑스출판법 제 13 조는 반론권과 정정보도요구권을 규정했고 또한 1883 년의
스페인형법도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법률로서 실제에 있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반론, 내지는 정정보도청구의 권리가
오랜 역사와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관념은 일찍부터 언론의 자유보장이란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이른바 인권보호사상에서 싹이 텃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오늘날 매스컴의 대중파급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언론윤리강령의 준수는 꼭 실천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보도기관이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데서 각종규제기구가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 경희대학교, 미조리대학교 (신문학석사) , 경희대학교대학원 졸업 (정치학박사)

□ 저술 : 비교신문학 (공저) , 매스컴사이론(공저), 매스컴과 사회(공역) 외 다수

□ 현재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